성주군 참외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9년 3월 일
제 출 자 : 성주군수

1. 개정이유

○ 세계의 명물 성주참외와 지역의 우수한 문화와 역사적 전통을 선양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성주참외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현재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무국은 축제가 개최되는 그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 추가(제5조제3항)
나.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 지원 삭제(제5조제4항)
다. 수입금을 추진위원장 명의로 예치 관리하는 내용을 추진위원회로 변경 (제13조)
라. 예산의 집행 및 결산 등 회계업무는 민간에 이양(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 없음
다. 기타
 1) 개정 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참외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참외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무국은 축제가 개최되는 그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추진위원장”을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출원을 두되, 사무국장으로 임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무국) ①~②(생략) ③사무국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서신설> 1~4 (생략) ④ 추진위원회는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무국)①~②(현행과 같음) ③---------- **다만, 사무국은 축제가 개최되는 그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1~4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3조(수입) ①(생략) ②수입금은 **추진위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생략)	제13조(수입) ①(현행과 같음) ②수입금은 **추진위원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현행과 같음)
제16조(지출원)①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출원을 두되, 지출원은 축제담당과장으로 하되, 사무국 설치시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 ②(생략)	제16조(지출원)①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출원을 두되, 사무국장으로 임면한다. ②(현행과 같음)